

의료법인과 의료재단,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재단을 세우고 싶는데 의료법인과 뭐가 다른가요?” —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법령 근거·세제·통계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둘은 모두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출발하는 ‘형제’ 관계이지만, 누가 허가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갑니다.

의료법인

의료법 제48조 근거, 시·도지사 허가. 목적이 의료기관 개설·경영으로 특정. 부대사업은 의료법 제49조 범위로 한정.

의료재단(재단법인)

민법 제32조 근거 비영리 재단법인. 주무관청(복지부·시·도) 허가. 의료지원·연구·복지 등 공익목적의 폭이 넓음.

공통점

둘 다 비영리. 출연재산은 환수 불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유사 비영리법인 귀속(민법 제80조).

21,318개국세청 공시 공익법인 수
(2025 결산 기준)**1,152개**그중 '의료' 목적
공익법인 (전체의 5%)**50%**상속세 최고세율
(과표 30억 초과)**0원**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01 네 가지 형태 한눈에 비교

구분	개인(개인병원)	의료법인	재단법인(의료재단)	사단법인
설립근거	없음(사업자등록)	의료법 제48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본질	자연인	재단법인의 일종 (민법 재단법인 준용·제50조)	재산의 결합체	사람의 결합체
구성요소	개인	출연재산 + 이사회	출연재산 + 이사회	2인 이상 사원(총회)
의사결정	본인 단독	이사회	이사회	사원총회 + 이사회
허가기관	관할 보건소(신고)	시·도지사	주무관청(복지부·시·도)	주무관청
세제	종합소득세	법인세(수익사업) +공익법인 혜택	법인세(수익사업) +공익법인 혜택	법인세(수익사업)
해산 시 재산	상속	국가·유사 비영리법인 귀속	국가·유사 비영리법인 귀속	정관·총회 결의(유사 목적)
감독	약함	강함(설립·정관변경 허가)	강함	강함

한 줄 정리 — 개인은 ‘내 것’, 사단은 ‘사람들의 모임’, 재단은 ‘돈(재산)에 목적을 새긴 것’입니다. **의료법인은 그 재단법인을 의료업에 특화한 형태**라고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02 의료법인 vs 의료재단, 결정적 차이 3가지

① 목적의 폭

의료법인은 목적이 **의료업으로 좁게 특정**됩니다. 의료재단은 정관에 정한 공익목적(의료지원·연구·장학·복지)이면 폭이 넓고, 직접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합니다.

② 허가기관

의료법인 = **시·도지사**(주사무소 소재지). 의료재단 = 사업 성격에 따른 **주무관청**(복지부 또는 시·도).

③ 무게중심

“내가 직접 병원을 운영” → **의료법인**. “의료연구·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중심, 필요 시 병원도 개설” → **재단법인**.

실무 감각 — 거림에서는 출연자의 **5년·10년 그림**을 먼저 듣고 형태를 권합니다. 형태를 잘못 고르면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거나 세제 혜택을 놓칩니다.

03 재단 설립 요건 — 무엇을 갖춰야 하나

재단법인의 본질은 출연재산입니다. 사원(사람)이 없어도 되지만, 목적을 실현할 재산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건	내용	근거
출연재산	법령상 일률적 최저액 규정 없음. 주무관청이 목적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통상 운영비를 이자·임대수익으로 충당할 기 본재산 요구)	민법 제43조·주무관청 심사
정관 필수 기재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민법 제43조·제40조
이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임원 정수는 정관·주무관청 지침)	민법 제57조
감사	임의기관이나 공익법인·의료법인은 사실상 필수(통상 정관에 둠)	민법 제66조
주무관청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의료·복지 = 복지부 또는 시·도)	민법 제32조

주의 — 출연재산은 ‘돌려받을 돈’이 아닙니다

기본재산은 처분·담보 제공 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고, 해산하면 국가나 유사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목적에 바친 돈”이라는 점을 가족과 충분히 합의하십시오.

04 설립 절차 — 6단계 로드맵

1	설립 준비 설립취지서·사업계획·자금조달 계획 정리, 출연재산·임원 후보 확정. 이 단계 설 계가 인허가 통과율을 좌우.	1	설립등기 ◀ 3주 이내 허가일부터 3주 이내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민법 제49조①). 이 등기 로 법인이 비로소 ‘성립’.
2	정관 작성 및 재산 출연 민법 제43조 필수 기재 정관 작성, 기본재산 목록·기부(출연) 확정. 재산목록·기부 신청서·임원취임승낙서 구비.	2	법인 성립 및 사후신고 법인격 취득 후 세무서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출연재산 등기 이전 완료.
3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정관·취지서·재산목록·사업계획서·임원명단 첨부. 의료법인은 시·도지사. 공공 성·지역 의료수요·재정 타당성 심사.	3	의료기관 개설 법인 명의로 관할 시·도(병원급) 개설허가 → 진료 시작. 시설·인력 기준 충족 전 제.

핵심 마감 — 설립허가 후 3주 이내 설립등기. 이 기한을 놓치면 절차가 처음부터 꼬입니다.

05 세제 혜택 — 출연·운영 두 단계에서 나온다

세목	혜택	근거
상속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 가액 불산입	상증세법 제16조
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 세 과세가액 불산입(목적 외 사용 시 추징)	상증세법 제48조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소득 과세 제외, 수 익사업만 과세(고유목적사업준비 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지방세	고유목적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조례별 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속세율 구조 (5단계 초과누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1천만원
5억~10억원	30%	6천만원
10억~30억원	40%	1.6억원
30억원 초과	50%	4.6억원

왜 중요한가 — 수십억 자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최고 50% 세율이 붙지만, 같은 재산
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단 ‘절세’가 아니라 ‘공익 출연’의 결
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06 비영리·공익성 의무와 운영 제약

이익을 나눌 수 없다

출연자·임원에게 이익 배당 불가. 수익이 나도 목적사업에 재투입. 보수는 정관·이사회가 정한 정당한 범위에서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조차 영리 추구를 금지(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수익사업은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분과 그 밖의 사업분으로 구분 기록(법인세법상 구분경리). 섞으면 세무상 불이익.

해산해도 재산은 돌아오지 않는다

정관에 정한 귀속권리자가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로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처분, 그것도 안 되면 국고 귀속(민법 제80조).

공시의무 (데이터 기준)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출연재산) 3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상중세법 제50조의3). 규모별 외부감사·전용계좌 의무도 적용.

07 우리 병원은 어느 쪽인가 — 형태 선택 가이드

의료법인 선택

“내가 직접 병원을 운영·확장하겠다”

- ▶ 의료기관 개설·경영이 본업
- ▶ 시·도지사 허가(시설·자금 요건 엄격)
- ▶ 부대사업은 의료법 제49조 범위 한정
- ▶ 양도·승계·법인 매각 설계에 유리

재단법인 선택

“공익적 의료·연구·지원 중심, 필요 시 병원도 개설”

- ▶ 의료지원·연구·장학·복지 등 폭넓은 공익
- ▶ 주무관청(복지부·시·도) 허가
- ▶ 대규모 자산의 공익 출연·상속 설계에 적합
- ▶ 직접 의료기관 개설 주체도 될 수 있음

08 설립 전 체크리스트

- ✓ 목적사업을 굴릴 기본재산 확보(운영비 총당 수준)
- ✓ 이사·감사 등 임원 후보를 결격사유 없이 확보
- ✓ 정관 필수기재(목적·명칭·소재지·자산·임원임면) 구비
- ✓ 수익사업 구분회계·공시 체계 운영 준비
- ✓ 출연재산을 영구히 공익에 바칠 각오(환수 불가)
- ✓ 의료업 직접 영위인가, 공익 지원 중심인가(형태 선택)
- ✓ 설립허가 후 3주 내 설립등기 일정 확보
-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을 가족·관계자와 합의

상담 문의

형태부터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의료법인이 맞는지 재단법인이 맞는지 — 출연자의 5년·10년 그림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거림의료컨설팅이 부산·경남 현장 경험으로 형태 선택부터 정관·허가·등기까지 함께합니다.

☎ 010-5786-8307

grmc.co.kr · 거림의료컨설팅

고지 ·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연재산 최저액·공시·감면 기준은 관청·사업·연도별 편차가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관청 및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2025년 기준).

출처 · 의료법·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2025 결산: 공익법인 21,318개·의료 목적 1,152개) / 국세청 상속세 세율.